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유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2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 강유정·박희승·진선미

이건태 • 양부남 • 이춘석

임오경 · 김한규 · 민형배

박용갑・박해철・김우영

문정복 • 전용기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.

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빈번히 노출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등 정신건강이 취약해 지기 쉬운데, 본인 및 타인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심리적 회복 력을 높이고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서적인 안정 및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4항 등).

법률 제 호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
제29조제4항 중 "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"를 "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"로, "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"을 "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
- 2. 인간 및 사회·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인문교육 제41조제3항 중 "예방교육을"을 "예방교육과 인문교육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지원센터) ① (생 략)	제17조(지원센터) ① (현행과 같
	<u>♦</u>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	②
업무를 한다.	
1. ~ 4의2. (생 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의3.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
	<u>및 지원</u>
5. • 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9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	제29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
의 교육) ① ~ ③ (생 략)	의 교육) ① ~ ③ (현행과 같
	음)
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	④ <u>-</u> - <u>-</u>
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	속 대중문화예술인이
<u>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방지</u>	
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	<u>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</u>
<u>인이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	회 이상
문기관이 실시하는 <u>성교육 및</u>	
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	
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	
조치를 하여야 한다.	
<u> <신 설></u>	1.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
	양과 성폭력 · 성매매 · 성희롱
	방지를 위한 성교육 및 성폭

<신 설>

- ⑤ (생 략)
- 제41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 -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・성매매・성희롱 예 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④ (생 략)

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
<u>2. 인간 및 사회·문화 등에 대</u>
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인문교
<u>육</u>
⑤ (현행과 같음)
제41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
예방
교육과 인문교육을

④ (현행과 같음)